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혜은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보도자료

2021. 10. 6.(수)

제 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사건 처분 결과

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 처분 사건(제10조 제1항 제2호)
 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0조 제2항)
 - 혐의사실 요지, 불기소이유 요지,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(제10조 제3항)
 - 예외적 실명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(제12조 제1항)
- ※ 2021. 10. 6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(부장검사 김경근)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, 오세훈 서울시장 및 박영선 후보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(26건) 전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.
- 10. 1.(금) 및 10. 6.(수) 일본 도쿄아파트 공방과 관련된 박영선 후보자 및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등 6명 모두를 혐의없음 처분하였고, 재난지원금 공약 관련 시민단체 고발사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.
- 10. 6.(수) 내곡동 토지, 파이시티, 보수단체 집회 참석 등과 관련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여야 정치인, 언론사 관계자 등 19명 전부를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.

- 검찰은 오세훈 시장 사건과 관련하여, ① 경작인, 측량팀장, 생태탕 식당 모자, 오시장 가족 등 관련자 20여명을 조사하고, ② 오시장 측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서울시 등 관계 기관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충실하게 진행했고, ③ 측량 현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도 개최 하였습니다.
- 당시 후보자의 ‘측량현장에 안 갔다’는 후보자 토론회 발언과 관련하여, 후보자의 위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, ‘후보자 토론회’에서 「처가의 토지 보상에 후보자가 관여 했느냐」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,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
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*(2020. 7. 16. 선고 2019도13328호) 취지와도 같고,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도 동일했습니다.

- ※ 대법원은 “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,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,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”고 판시함
- 경찰이 송치한 ‘파이시티 관련 발언’, ‘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’ 역시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,
 그 외 여야 정당 및 시민단체가 고발한 피고발인 18명도 허위 사실공표로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.

Ⅱ

박영선 후보자 관련 사건 : 혐의없음

- 검찰은 박영선 후보자 사건과 관련하여, 도쿄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및 거래서류, 재산신고 기준일 당시의 월평균 환율에 따른 가액신고, 배우자 근무지 변동이력 및 주소변경내역 확인 등 실체 규명을 위해 다각도의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.
- 수사한 결과, 박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아파트의 처분, 실거주 목적,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. ☑